03 병·의원 대상 –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 사업 참여 절차 안내

- **주요 내용** : 1단계 시범기관(병·의원)에서 협력관계의 2단계 시범기관(종합병원 및 전문병원)으로 요양급여 의뢰
- **참여 방법** :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2단계 시범기관(회송기관)에 참여 희망 연락
  *** 시범사업 참여 신청기간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·회송 시범사업 지침 참고**
- **대상 환자** : 시범기관에 외래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, 진료의뢰가 필요한 환자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건강보험 환자 (의료급여, 차상위, 보훈 제외)

시범사업 참여 환자 동의서 작성 ≫ 진료의뢰·회송 중계 시스템에 의뢰 등록 ≫ 진료예약 확인

04 전문병원·종합병원 대상 –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 사업 참여 절차 안내

- **목적** : 환자 상태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뢰·회송 기준과 절차,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임. 의료이용 효율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료 협력 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**건강보험 수가 시범 적용**을 실시하고자 함.
- **신청 대상** :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**종합병원** 또는 제3조의5에 따른 **전문병원**으로,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
- **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** : 아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 공지사항 참고
- **공모시기**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 공지사항 참고

참고 사이트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ttps://www.hira.or.kr) → 알림 → 공지사항
-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(https://ef.hira.or.kr) → 종합안내 → 게시판 → 공지사항 →「 협력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 공모 」

05 사업 관련 문의처

- **(중계시스템 관련)** **건강보험심사평가원**
  ☎ 문의 : 1644-2000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)
- **(진료정보교류시스템 관련)** **한국보건의료정보원**
  ☎ 문의 : 1666-7598(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단 콜센터)
  보건복지부 마이차트 질문하기 게시판(mychart.kr → 참여마당 → 질문하기(Q&A))

진료정보교류사업
참여의료기관

수가 적용을 위한 절차 가이드

2025. 03

(재)한국보건의료정보원
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

사전 안내사항

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한 귀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
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현재 사용 중이신 EMR에 탑재된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하여
'협력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·회송 시범사업' 수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
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.

본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보다 나은 국민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
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앞으로도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,
한국보건의료정보원 진료정보교류사업단은
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늘 귀 기관과 함께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KHIS (재)한국보건의료정보원

01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·회송 시범 사업 개요

- **사업 목적** : 병·의원과 종합병원 등의 대형병원 간 충실한 협력진료 유도 및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완화
- **사업 내용** : 1단계 시범기관(의뢰기관)과 2단계 시범기관(회송기관) 간 구축된 협력 진료체계를 활용하여 환자 의뢰·회송 시 건강보험 수가 적용
- **사업 기간** : '16. 5. ~ '27. 12.
- **대상기관 : (의뢰)** 2단계 시범기관과 협력관계에 있는 1단계 진료기관, 상급종합병원에 의뢰하는 "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제2항의 1단계 요양급여"를 담당하는 의료기관
  (회송) 복지부가 지정한 종합병원·전문병원
- **의뢰·회송 체계** : 1단계 시범기관은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2단계 시범기관에 의뢰*, 2단계 기관은 회송 시 환자를 의뢰한 1단계 협력기관을 우선으로 하나, 의학적 필요 등의 경우 비 협력기관으로 회송 가능
  * 단,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협약을 맺지 않아도 의뢰 가능
- **참여기관** : 의뢰기관 19,927개소, 회송기관 313개소('25. 2월 기준)
- **시범수가** : 진료의뢰료 Ⅰ·Ⅱ·Ⅲ 및 회송료

02 진료의뢰료·회송료 상세 안내

- **진료의뢰료 :** 1단계 진료기관이 의뢰 시에 환자의 진료·영상정보를 표준화된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수가 차등하여 산정

구분	금액 ('25년)	내용	비고
진료의뢰료 Ⅰ	11,500원	의뢰서	비수도권 동일 광역시·도 내 의뢰 시 진료의뢰료Ⅰ에 별도 가산(6,500원)
진료의뢰료 Ⅰ+Ⅱ	16,000원	의뢰서+진료정보	
진료의뢰료 Ⅰ+Ⅲ	20,500원	의뢰서+진료정보+영상정보	

※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통해 진료의뢰 시, 1단계 시범기관(병·의원) → 2단계 시범기관(전문·종합병원) 5,500원, 전문·종합병원 → 상급종합병원 11,000원 수가 차등 적용

- **회송료 :** 종합병원 이하 2단계 시범기관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회송 시 산정

회송료	금액 ('25년)	
	입원	외래
종합병원	58,000원	44,000원
전문병원(종병 제외)	50,000원	38,000원